|  |  |  |
| --- | --- | --- |
| **일반납세자로 인정 또는 등기되기 전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59호  일반납세자로 인정 또는 등기되기 전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자가 세무등기일로부터 일반납세자로 인정 또는 등기되지 전까지의 기간에 생산경영소득이 없어 매출액과 과세율에 따른 과세액 간이계산 및 증치세 납부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그가 해당 기간동안 취득한 증치세 공제증빙은 일반납세자로 인정 또는 등기된 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현행 규정상 위에서 언급한 증치세 공제증빙에 대한 인증 또는 대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구매자인 납세자가 취득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은 <증치세 영수증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 보급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73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판매자인 납세자가 주서(紅字)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발행한 후 남서(藍字)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다시 새로 발행한다.  구매자인 납세자가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73호의 규정에 따라 <주서(紅字)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 정보표> 또는 <주서(紅字) 화물운수업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 정보표>를 작성 및 발행하는 경우 '구매하는 화물 또는 용역, 서비스가 증치세 공제 항목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또는 '구매하는 서비스가 증치세 공제 항목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선택한다.  (2) 납세자가 취득한 해관의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는 <기한이 경과된 증치세 공제증빙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50호)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의 대조검사를 통과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3. 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 처리가 끝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8월 19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纳税人认定或登记为一般纳税人前进项税额抵扣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59号  　　现将纳税人认定或登记为一般纳税人前进项税额抵扣问题公告如下：  　　一、纳税人自办理税务登记至认定或登记为一般纳税人期间，未取得生产经营收入，未按照销售额和征收率简易计算应纳税额申报缴纳增值税的，其在此期间取得的增值税扣税凭证，可以在认定或登记为一般纳税人后抵扣进项税额。  　　二、上述增值税扣税凭证按照现行规定无法办理认证或者稽核比对的，按照以下规定处理：  　　（一）购买方纳税人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推行增值税发票系统升级版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73号）规定的程序，由销售方纳税人开具红字增值税专用发票后重新开具蓝字增值税专用发票。  　　购买方纳税人按照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73号规定填开《开具红字增值税专用发票信息表》或《开具红字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信息表》时，选择“所购货物或劳务、服务不属于增值税扣税项目范围”或“所购服务不属于增值税扣税项目范围”。  　　（二）纳税人取得的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逾期增值税扣税凭证抵扣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50号）规定的程序，经国家税务总局稽核比对相符后抵扣进项税额。  　　三、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此前未处理的事项，按照本公告规定执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5年8月19日 |